

##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2조에 의거하여, 소규모 합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정지기간 동안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.

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공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<http://dart.fss.or.kr>)

- 다 음 -

1. 기준일 : 2015년 4월. 1일
2. 주주명부 기재변경 정지기간 : 2015년 4월 2일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.

2015년 3월 17일

근화제약주식회사  
대표이사 지그프리드 크솔리서

명의개서대리인  
주식회사 하나은행장 김 병 호